

의안번호	2206938
의 퇴 인	용혜인 의원
회 답 일	2025. 1. 9.
추계번호	24F6311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최저세액 하향
조정 및 대도시 중과세 제외 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8조제2항 신설 (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)	○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등기에 대한 최저세액 하향 조정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협동조합, 협동조합 연합회,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말함 - 최저세액: (현행) 11만2천5백원 → 4만2백원
2	안 제28조제3항 (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)	○ 대도시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법인에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제외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8조제2항 신설 (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8조제3항 (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최저세액 하향 조정 및 대도시 법인 설립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등록면허세의 세수

감소 예상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출자금 현황 증가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참고로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다음과 같음

－ 상사회사,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

* ① 설립과 납입: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(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함. 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과 자본 또는 출자금 증가 등의 경우에도 같음)

②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: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

－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

* ① 설립과 납입: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

②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: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

－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(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):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

－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: 건당 11만2천5백원

－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: 건당 4만2백원

－ 그 밖의 등기: 건당 4만2백원

○ 그리고 2022년 기준 일반협동조합은 19,649개(82.2%), 사회적협동조합은 4,116개(17.2%), 연합회는 127개(0.5%)로 나타나고 있음

[표 1] 2022년 기준 협동조합 설립 현황

구분	계	일반협동조합	사회적협동조합	일반협동조합연합회	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조합수(개)	23,892	19,649	4,116	93	34
비중(%)	100.0	88.2	17.2	0.4	0.1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24. 5. 17. 「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」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